

#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제출연월일 : 2003. 1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된 버스승차권판매소 및 광고물 등이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에서 삭제됨에 따라 점용허가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허가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광고탑, 광고판, 간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버스승차권판매소,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함(안 제2조).
- 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함(안 제5조).
- 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바. 도로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제86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36조의3, 제37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5조
- 나. 입법예고 : 2003. 5. 23~6. 20일까지 28일간(접수의견 2건, 반영 2건)
- 다. 규제관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2003. 10. 8)

##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광고탑, 광고판, 간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버스승차권판매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제3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의 징수)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도로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전액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④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거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는 별표 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영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아파트 포함)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 및 제1항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자가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영 제36조의3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③변상금의 조정·분할납부·감면·가산금 및 독촉·소액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6조의2제3항 내지 제6항, 영 제37조의 3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도로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 및 과태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제1조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①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① 개	① 년	②,00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①,350	
	공 중 전 화			③,150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①㎡	① 년	토지가격에 ②0%를 곱한 금액	
②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시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①00미터이하	길이 ①m	① 년	③50
		직경 ①00미터초과 ①20미터이하			①,150
		직경 ①20미터초과 ①40미터이하			②,300
		직경 ①40미터초과 ①60미터이하			③,500
		직경 ①60미터초과 ①80미터이하			④,700
		직경 ①80미터초과 ②00미터이하			⑤,900
		직경 ②00미터초과 ③00미터이하			⑧,100
		직경 ③00미터초과			①4,600
		직경 ④00미터초과			②0,450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①00미터이하
	직경 ①00미터초과 ①20미터이하				①,150
	직경 ①20미터초과 ①40미터이하				③,500
	직경 ①40미터초과 ①60미터이하				⑤,250
	직경 ①60미터초과 ①80미터이하				⑦,000
	직경 ①80미터초과 ②00미터이하				⑧,7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직경 ①미터초과 ②미터이하			③3,100	
		직경 ②미터초과 ③미터이하			④1,850	
		직경 ③미터초과			⑤0,600	
③ 광고탑·광고판·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현수막·사설안내표지·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①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①㎡	① 일	②00	
		기 타			① 년	⑤5,950
	현수막	사 설 안 내 표 지		① 개	① 년	④5,100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①㎡			① 일
				기타의 용도	②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①㎡	① 년	①17,900
	기 타		⑤5,950			
	④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①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①㎡	① 년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②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③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③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⑤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①㎡	① 년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⑥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①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①㎡	① 년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②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①00을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버스승차권 판매대 생활 정보지통합배 부대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버스승차권 판매대	점용면적 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개소		138p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m <sup>2</sup>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 벽·발판·대기 소등의 공사 용 시설 및 재료 도로굴 착부분 기타	일시점용한것	점용면적 1m <sup>2</sup>	1 일	2000
	기 타		1 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 1호 내지 제 2호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비 고

-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m<sup>2</sup>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m<sup>2</sup> 이상 1m<sup>2</sup>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m<sup>2</sup> 또는 1m로 계산한다 예 2.7m<sup>2</sup> ⇒ 3m<sup>2</sup> 2.4m<sup>2</sup> ⇒ 2m<sup>2</sup> 0.7m<sup>2</sup> ⇒ 1m<sup>2</sup> 0.4m<sup>2</sup> ⇒ 0

-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①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⑤ 단위당 점용료는 ①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①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⑥ 위 표 제②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②0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 ⑦ 표 제②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배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 ⑧ 표 제⑧호의 점용물중 도로굴착부분에 대한 일시점용료는 도로굴착폭으로 산정하되 최소굴착폭은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에 의거 ①.2M로 한다
- ⑨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②.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②분의 ①을 지하 ④.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⑤분의 ④를 각각 감액한다
- ⑩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①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만하여 ③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제⑥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①0퍼센트 이상 ②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①0.1000 + 증가율 ①0.1000 × ③.1000
②0퍼센트 이상 ③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①3.1000 + 증가율 ②0.1000 × ①.1000
③0퍼센트 이상 ④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①6.1000 + 증가율 ③0.1000 × ⑥.1000
④0퍼센트 이상 ⑤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①9.1000 + 증가율 ④0.1000 × ③.1000
⑤0퍼센트 이상 ⑥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②2.1000 + 증가율 ⑤0.1000 × ①.1000
⑥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②5.1000 + 증가율 ⑥0.1000 × ⑤.1000

## 【참고사항】

### 도 로 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 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삭제<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③삭제<1970.8.10>

제7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삭제 <1995.12.6>

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개정 1999.2.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9.2.8>

제8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2.6>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3. 삭제<1999.2.8>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5.12.6>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2.6>

##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6.7.16, 1999.8.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삭제 <1999.8.6>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994.12.23, 2002.5.6>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9.8.6>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양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9.16, 1994.12.23, 1999.8.6>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

제36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37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8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공공목적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12.7, 1999.9.2, 2002.5.27>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21조 (점용료 감면)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해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7.23, 1999.9.2>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1천원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2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5.27>

1.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 : 수입인지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지 방 세 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27>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2000.12.29>

제28조 (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신설 1974.12.27>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신설 1994.12.22>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개정 1994.12.2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94.12.22>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79조 (소액부징수)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1994.12.22, 1998.12.31>

[본조신설 1976.12.31] (小額不徵收)